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3호 2020. 8. 18(화)

공 고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 2020-1287호**입 법 예 고**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8.

목 포 시 장**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과제 반영
-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탁운영(안 제8조 2항)
 -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대체
-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7조 1항)
 - 현행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8명 이내로 개선(개정전 7명 이내)

3. 개정 시행규칙[안] : 별첨**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해당없음**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개선 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8. 예산사항 : 해당 없음****9.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8. ~ 2020. 9. 7. <21일>

10.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해양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2층 해양항만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 061-270-8549, FAX 270-3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칙(안)>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탁운영)제2항1호 “인감증명서 1부”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한다
제17조(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제1항 구성 인원 “7명 이내”를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 (위탁운영) 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인감증명서 1부</u>(법인인 경우에는 <u>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각 1부</u>,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u>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u>) 2~5.(생략) 제17조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조례 제28조에 따라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7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②(현행과 같음) 1. <u>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u>(법인인 경우에는 <u>법인등기부등본</u>,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u>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u>) 2~5.(현행과 같음) 제17조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 ———— <u>5명 이상 8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요트마리나 관리 · 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희망 시설명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